

#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(갑)

(      년      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	처리기간	즉시
--	------	----

## 1. 신고자 인적사항

① 성명(법인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업태	④ 종목

## 2.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

구분	매입처수	건수	취득금액	매입세액 공제액
⑤ 합계				
⑥ 영수증 수취분				
⑦ 계산서 수취분				

## 3.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

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

매출액			대상액 한도계산		당기 매입액			⑩ 공제가능한 금액 (=⑫-⑭)
⑧ 합계	⑨ 예정분	⑩ 확정분	⑪ 한도율	⑫ 한도액	⑬ 합계	⑭ 세금 계산서	⑮ 영수증 등	

나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

⑪ 공제대상금액 (=⑬과 ⑭의 금액 중 적은 금액)	공제대상세액		이미 공제받은 세액			⑫ 공제 (납부)할 세액 (=⑬-⑭)
	⑬ 공제율	⑭ 공제대상 세액	⑮ 합계	⑯ 예정 신고분	⑰ 월별 조기분	

## 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(합계금액으로 기재,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)

일련 번호	⑱ 공급자		⑲ 구분 코드*	⑳ 건수	㉑ 품명	㉒ 수량	㉓ 차량번호 (중고자동차)	㉔ 차대번호 (중고자동차)	㉕ 취득금액
	성명 또는 상호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			
	합계								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
\* 구분코드 : 1. 중고자동차, 2. 기타 재활용폐자원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.

신고인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     귀하

첨부서류	* 구비서류: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*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(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)에는 별지 제69호서식(2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**작성 방법**

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.

**2.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** (⑤ ~ ⑦)

- ⑤: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.
  - ⑥: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, "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  - ⑦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,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- ※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: 109분의 9  
(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)
  - \*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
  -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: 103분의 3  
(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)

**3.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** (⑧ ~ ㉓)

- ※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.
- ⑧: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  - ⑨: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  - ⑩: 100분의 80(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)을 적습니다.
  - ⑪: 매출액합계(⑧)에 한도율(⑩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⑫: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  - ⑬: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.
  - ⑭: 한도액(⑪)에서 세금계산서분(⑫)을 뺀 금액을 적으며, 음수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  - ⑮: 공제대상금액(⑬)에 공제율(⑬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⑯: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  - ㉓: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) 4쪽 중 제3쪽 (43)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(△)로 적습니다.

**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** (㉔ ~ ㉓)
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.
- ㉔, ㉓: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.
  - ※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(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)에는 별지 제69호서식(2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
##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(을)

(      년      기)

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-	--

일련 번호	공급자		구분 코드*	건수	품명	수량	차량번호 (중고자동차)	차대번호 (중고자동차)	취득금액
	성명 또는 상호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			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8									
9									
10									
11									
12									
13									
14									
15									
16									
17									
18									
19									
20									
21									
22									
23									
24									
25									

\* 구분코드 : 1. 중고자동차, 2. 기타 재활용폐자원